■ (해양경찰청) 범죄수사규칙 [별지 제189호의3 서식]

# 긴급응급조치 변경 결정서

제 호

다음 행위자에 대하여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긴급응급조치의 변경을 결정합니다.

| |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
| 행위자 | 성 명 | | 주민등록번호 | ( 세 ) |
| | 직 업 | | | |
| | 주 거 | | | |
| | 변 호 인 | | | |
| 상대방등 | 성 명 | | | |
| | 주 소 | | | |
| | 직 장 ( 소 재 지) | | | |
| 현재 긴급응급조치의 내용 | 결정일자 | 년 월 일 | | |
| | 현재 긴급응급조치 | [□]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<br>[□]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에 대한 「전기통신기본법」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| | |
| | 긴급응급조치의 기간 및 장소 | 기간 : | | |
| | | 장소 : | | |
| 변경된 긴급응급조치의 내용 | 변경 결정 일자 | 년 월 일 | | |
| | 변경된 긴급응급조치 | [□]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<br>[□]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에 대한 「전기통신기본법」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| | |
| | 긴급응급조치의 기간 및 장소 | 기간 : | | |
| | | 장소 : | | |
| 스토킹행위의 요지 및 긴급응급조치 변경 결정 사유 | | | | |

사법경찰관